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676

제출연월일 : 2024. 7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·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여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·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677호) 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3제1호에 따라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

제9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3제3호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·운영의 신고를 할 수 없다.
- ④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3제4호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 다.
- ⑤ 교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에 해당하면 그 신고의 수리는 효력을 잃는다.

제17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을 학원에 취업시킨 경우(강사나

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습소 설립·운영 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퇴직한 입학사정관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학원 설립·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학원 설립·운영 등록을 한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 유로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	제9조(결격사유 등) ①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	
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·운영	
의 등록을 할 수 없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8.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3제
	1호에 따라 학원을 설립할 수
	없는 입학사정관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3
	제3호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할
	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제14조에
	따른 교습소 설립·운영의 신고
	를 할 수 없다.
<u><신 설></u>	④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3
	제4호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
	없는 입학사정관은 제14조의2
	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
	<u>를 할 수 없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교습자나 개인과외교습자가
	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입학사
	정관에 해당하면 그 신고의 수
	리는 효력을 잃는다.
제17조(행정처분) ① 교육감은 학	제17조(행정처분) ①

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
1. ~ 10. (생략)

11. · 12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10의2.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
의3제2호를 위반하여 퇴직한
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
한 입학사정관을 학원에 취
업시킨 경우(강사나 법인의

임원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)

11. • 1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